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0. 3. 3.(화) 배포</p>	
보도일	2020. 3. 4.(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4.(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대학학사제도과	담당자	과 장 구영실 (☎ 044-203-6249) 서기관 박창원 (☎ 044-203-6255)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 ◆ 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하여 학비 부담 완화 노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 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금 지원순위 〉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붙임1 참고)들을 반영한다.
 - 또한,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법전원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기준
 2.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



붙임 1

법전원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기준

- 기초~소득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증감률, 등록금 수준 및 증감, 지방인재 선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예산 배정

○ '19학년도 특별전형 선발비율

구분	가중치	비고
입학정원의 7%인 경우	1.0	충남대 (1교)
입학정원의 7% 초과 ~ 8% 이하	1.05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5교)
입학정원의 8% 초과 ~ 9% 이하	1.1	전남대, 충북대, 경희대, 영남대, 원광대 (5교)
입학정원의 9% 초과 ~	1.15	서울시립대, 전북대, 제주대, 서강대 (4교)

○ '19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구분	가중치	비고
30%(이행점검 기준) ~ 35% 미만	1.0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5교)
35% 이상 ~ 40% 미만	1.1	서울대, 건국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5교)
40% 이상	1.2	강원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영남대 (5교)

○ 전년대비 '19년도 장학금 지급률 증감

구분	가중치	비고
증가한 경우	1.1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13교)
감소한 경우	2% 미만	경북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충남대, 고려대, 성균관대, 영남대, 인하대, 한국외대 (9교)
	2% 이상	아주대, 원광대, 중앙대 (3교)

○ 평균 등록금(국공립·사립별) 대비 법전원별 등록금 수준

구분		가중치	비고
평균 미만	10% 이상	1.15	건국대 (1교)
	5% 이상 ~ 10% 미만	1.1	동아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서강대, 한국외대 (6교)
	5% 미만	1.05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10교)
평균 초과	5% 미만	0.95	제주대,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4교)
	5% 이상 ~ 10% 미만	0.9	성균관대 (1교)
	10% 이상	0.85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교)

○ '17년 대비 '20년도 등록금 증감

구분	가중치	비고
'17년 이후 등록금 유지	1.0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24교)
(등록금 인상 0.1% 이상 ~	0.9	건국대(1교)

○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지역인재 선발대상 대학에 한하며, 구체적 가중치는 '20.하반기에 별도 안내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

구분	대학명	입학정원(명)	기초~소득3구간 이하 학생 수(명)	배정금액(천원)
국공립	강원대	40	24	114,246
국공립	경북대	120	69	223,948
국공립	부산대	120	73	364,047
국공립	서울대	150	55	194,283
국공립	서울시립대	50	33	140,767
국공립	전남대	120	80	272,015
국공립	전북대	80	41	178,132
국공립	제주대	40	18	84,907
국공립	충남대	100	52	168,390
국공립	충북대	70	30	130,610
사립	건국대	40	30	207,649
사립	경희대	60	31	206,327
사립	고려대	120	40	169,123
사립	동아대	80	54	361,129
사립	서강대	40	19	139,165
사립	성균관대	120	37	165,642
사립	아주대	50	18	75,608
사립	연세대	120	50	258,383
사립	영남대	70	44	288,903
사립	원광대	60	33	160,501
사립	이화여대	100	41	287,900
사립	인하대	50	26	149,376
사립	중앙대	50	20	92,852
사립	한국외대	50	23	125,848
사립	한양대	100	39	225,249
계		2,000	980	4,785,000

※ 기초~소득3구간 이하 학생 수는 '20.2.21자 소득구간 통보 시 기준 인원으로 향후 이의신청 등 최종 소득구간 판정에 따른 대학별 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20.하.)

※ 상기 배정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사업관리비 50백만원이 제외된 금액임